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265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정부안)	3

I. 개요

1. 정부제출(의안번호 제1265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제출
- (2) 제 안 일 : 2025. 9. 3.
- (3) 회 부 일 : 2024.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제 55조, 시행령 제100조) ○ 예식장업 ○ 부동산중개업 ○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신 설>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미디어콘텐츠창작업</u> ☐ 부 칙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9)

- ☐ 개정안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¹⁾에 과세사업자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²⁾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 2)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는 특정 업종에서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세원 관리 및 과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내역을 현금매출명세서로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임.

□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함.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이에 해당하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음.

또한,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음.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및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구분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면세)
코드	921505	940306
세 분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기타 자영업
적용 범위	<u>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u>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u>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u>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대상 인원	1만 3천명 (2023년말 기준)	1만 4천명 (2023년말 기준)

주: 코드는 국세청 「2024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따름

자료: 국세청

□ 개정안에서 규율하려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 사업장 등 물적시설³⁾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으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함.⁴⁾

반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의 경우에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분류되며, 이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함.⁵⁾

따라서, 과세사업자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과.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인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⁶⁾를 하여야 하는 한편,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자는 외국법인 구글과의 계약에 따라 구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동영상을 공급하고, 시청자는 구글과의 계약에 따라 유튜버의 동영상을 시청하며 구글로부터 슈퍼챗을 구매하거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가입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유튜버는 시청자들로부터 슈퍼챗 등을 후원받는 경우 구글과 체결한 수익배분 계약에 따라 수익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임.

[유튜버(과세사업자) 수익창출 방법]

수익종류	수익창출 방법	대가 지급자
광고	파트너프로그램에 참여한 유튜버의 동영상, 보기 페이지, Shorts 피드 등을 통해 광고 노출	구글

6)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49조·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삭제 <2018. 12. 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익종류		수익창출 방법	대가 지급자
대 체 수 익 원	구독	YouTube Premium 월간 구독으로 광고 없이 구독자가 콘텐츠 시청한 분량을 기준으로 구독료 일부 지급	
	채널 멤버십	유튜버의 채널에 월 정기 결제 방식으로 가입 - 배지, 맞춤 이모티콘, 독점 콘텐츠 등 전용 혜택 제공	
	슈퍼챗 등	텍스트 메시지 또는 스티커 메시지를 구입하여 전송 - 실시간 채팅 메시지를 강조하고 유튜버와 소통	
	유튜브 쇼핑	유튜버가 채널을 통해 스토어와 연결하여 자체 제품 또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홍보	
	광고 협찬	유튜버가 국내기업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광고협찬을 받아 방송에 노출하고 대가를 수취	국내 기업
	개별 후원금	유튜브 채널 또는 실시간 방송 중 계좌를 게시하여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직접 수취	시청자

자료: 국세청

□ 그러나, 일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자가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⁷⁾가 발생하고 있고, 세금 감면 지역내에 허위 공유 오피스 사무실을 만들어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특히, 성상품화 논란 등이 있는 엑셀방송 운영 BJ의 경우 연 수백 억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하며, 지급한 출연료(비용)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하였음.⁸⁾

7) 온라인을 퇴폐적 유희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 학생들을 도박의 댁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등의 확대

8) 치명적 유혹, “사이버 룰살롱”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운영자 세무조사, 국세청, 2025.3.5.

또한, 수년 전부터 수익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해 동영상 화면에 유튜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송출하거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직접 후원금을 송금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신고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포함함으로써, 이를 통해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자기 계좌를 통해 직접 수취한 후원금, 개별 광고 협찬금 등의 수익에 대해 보다 투명한 과세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우선, 국세청이 2023년 발표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가 후원금과 광고수익을 신고 누락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

이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개별 수익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특히, 유튜브 방송 화면에 은행 계좌를 공개해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행위는 기존 외화 수취자료나 소득지급명세서로는 포착되지 않는 수익 형태로, 과세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⁹⁾

이러한 개별 수익은 유튜버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임.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유튜버가 자기 계좌를 통해 받은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¹⁰⁾,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수익의 투명한 파악과 신고를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신종 디지털 수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과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특히, 최근 정치 유튜버 등 특정 영역에서의 수익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별 수익 내역의 명확한 신고를 통해 과세당국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업종 구분 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의 유형을 판단¹¹⁾¹²⁾하고 있

9) 유튜버가 계좌번호를 노출하여 직접 받는 후원금, 개별 광고협찬금 등은 신고가 누락되어도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곤란하고, 유튜버가 수취한 후원금 등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아 추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국세청 보도자료,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 2023.2.9.).

10)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2025.1.8.).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음.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구분]

구분	세분류	세세분류	업종내용
분 류 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 업활동.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2)	실사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4)	방송 제작시설을 갖추고 텔레비전 방송사 로부터 요청받은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 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

그러나,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세사업자인 유튜버와 정확히 일치
하는 업종이 없고, 해당 업종은 국세청이 고시한 ‘2024년 귀속 기
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과세사업자인 유튜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활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 달성과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 측
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
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2024년 1월 1일에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2024년 7월 1일부
터 시행하였고, 차기 제12차 개정은 2029년 1월로 예정되어 있음.

을 법률상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산업분류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보건업¹³⁾ 사례의 경우에도 법률에서는 ‘보건업’으로 규정하되, 시행령에서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에도 타 법률의 정의 규정이나 표준산업분류에 없는 업종, 재화의 명칭이 존재¹⁴⁾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47

13)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 14) (업종) 떡방앗간, 과수원·목장용지·염전 임대업,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등
(재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예술창작품, 장아찌 등